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 번	안 호
	9-2-3

발의연월일 : 2013. 8. 26.

발의의원 : 정수현 의원, 하용하 의원  
(등 찬성의원 8인)

## 1.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 삭제(안 제3조제2호)
  -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어 삭제
-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 변경(안 제5조제5항)
  -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규정 신설(안 제5조의1)
-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나.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5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위원이 제5조의1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경과 조치) 종전 조례에 의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본 조례에 의거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u>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 보상금</u> 3. (생략)	제3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 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회에 한하여 연임-- _____ _____ _____ _____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1(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 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p> <p><u>제5조의2(위원의 해촉)</u>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li> <li>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li> <li>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li> <li>4. 위원이 제5조의1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li> </ol>

##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응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응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 서명날인서

의원명	서명	날인
정수현	정수현	2022.05.22
하용하	하용하	2022.05.22